

국내 정보보호관련 법규 분석

이 대 기*, 조 영 섭*, 윤 이 중**, 조 현 숙***

Analysis of Korean Laws on Information Security

Daiki Lee*, Yeongsub Cho*, Ejoong Yoon**, Hyunsook Cho***

요 약

최근 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일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여러 법규들이 제·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 정보나 통신비밀의 보호문제, 정보화의 역기능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행 법규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 침해 문제의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관련법들간의 상호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정보보호 문제와 관련된 전체 법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정보보호관련 법규의 재정비 및 심화되는 정보보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I. 서 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전반을 걸쳐 컴퓨터와 통신이 보편화되어 경제, 문화, 정치, 과학 등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대신에 변화에 따른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정보화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고, 자유로운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기본적인 인권 침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화를 재화적 가치로 인식되어 악용되거나 정보시스템에 불법 침해하여 정보의 고유기능을 변화시키는 컴퓨터범죄를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정보화는 기존의 상거래를 변화시켜 경제적인 거래 형태의 편리성을 가져다주는 대신에 모든 상거래가 전자매체(전자상거래)를 이용함으로 해서 상거래 내용의 노출이나, 악용의 소지가 많다. 그러므로 정보화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정보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만 개인정

보와 상거래 내용 등을 수집,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통신에 전송되는 모든 정보의 비밀보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국내 정보보호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정보보호 개별법의 제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이 분야의 여러 관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관련 법·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정보보호의 개요

1. 정보보호의 정의

정보보호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Donald B. Watne와 Peter Turney는 정보보호를 환경적인 재난이나 정보통신망의 오류, 컴퓨터의 악용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의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며, 정보통신망의 안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증기반연구팀(ETRI, Certification Infrastructure Research Team)

** 정보보호시스템연구부(Information Security System Department)

*** 정보보호기술연구본부(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Division)

전보안에는 사전예방, 발견, 사후회복 기능을 갖는 일반통제라 정의했고, Donn Parker는 보안은 부분적으로 위협의 조건, 위협, 자산의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의 효력을 방해받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했다.

다른 견해로는 인적 요인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사회적·반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의 고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적 대처방안으로 정보보호를 정의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정보보호라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정보보호란 정보의 비밀성·무결성·가용성을 보장하고, 정보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하여 인위적·물리적·기술적·자연적인 장애기능을 사전에 예방조치하고 사후 회복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보호의 필요성

정보기술의 활용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 전체의 정보화를 촉진시켜 풍요로운 정보사회를 이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를 오용 또는 남용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보화의 역기능이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정보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보보호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과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는 정보보호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전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정보보호의 필요성을 법적으로 명문화시켜 정부차원에서 정보보호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다섯 가지 측면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정상적인 정보의 기능유지 측면에서, 정보는 고유한 사용 목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필요한 장소, 필요한 사람, 필요한 시점에 정확히 전달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 자체가 비밀성이나 무결성 등을 보장하지 못하면 무용지물될 소지가 많으므로 정상적인 정보의 기능 유지를 위해 정보보호가 필요하다.

둘째,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정보에 관련된 모든 자산, 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의 손실과 왜곡으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운영과 정보에 관련된 모든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가 필요하다.

셋째,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정보는 정보통신망의 확대와 컴퓨터 보급확장 등으로 인한 정보의 집중화를 가져 왔고, 수집과 이용이 활성화·다양화가 되어 가고 있다. 그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이도 증가되어 가고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가 필요하다.

넷째, 국가안전에 관한 측면에서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국가기밀정책의 유출·파괴·훼손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정보통신망의 보안 협침으로 인한 국가기밀정보의 위협은 국가경쟁력 약화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보호가 필요하다.

다섯째, 정보윤리의 확보 측면에서 정보의 건전한 유통질서와 안전한 거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통질서 확립과 정보의 역기능을 예방, 방지할 수 있는 정보윤리의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가 필요하다.

3. 정보보호의 목표

정보보호는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내부 또는 외부의 침입자들로 인한 정보의 파괴, 변조, 불법유출 등의 범죄행위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유통 질서 확립과 정보의 부정적인 측면을 예방·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1. 비밀성(confidentiality)의 보장

비밀성이란 소극적 공격으로부터 전송자료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비밀성은 그 특성에 따라 핵무기나 방어전략과 같은 국가 비밀성 자료, 영업 또는 연구자료와 같은 기업적 성격의 자료, 신용도가 병력과 같은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등을 포함한다.

정보의 비밀성 보장은 비인가자와 불법 침입자의 접근을 통제하여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허가된 사람에게만 정보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뜻한

다. 비밀성 유지방법으로는 접근통제(access control), 암호화(encryption) 등이 있다.

3.2. 무결성(integrity)의 보장

무결성이란 정보를 정해진 절차에 의해 그리고 주어진 권한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결성 보장은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일치성을 유지하여 의도된 목적에 따라 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만약 정보의 무결성이 결여 되면 의사 결정의 신뢰성을 상실하여 정보의 가치가 아무 의미도 없어 질 수 있다. 무결성 유지방법으로는 물리적 통제(physical control), 회복 메카니즘(recovery mechanism) 등이 있다.

3.3. 가용성(availability)의 보장

가용성은 정보 시스템이 적절한 방법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권한이 주어진 사용자에게 정보서비스가 거부되어서는 아니된다.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적당한 반응시간이 책정되어야 한다. 비행기 제어나 병원의 응급 시스템과 같이 생명에 관계된 상황에서는 적시(real time)에 주어지는 지원의 가용성은 두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가용성의 보장은 정보를 허가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가용성 유지방법은 데이터 백업(backup), 중복성(redundancy) 유지, 위협(threat)요소 제거 등이 있다.

표 1. 정보보호관련 법·제도 현황

구 분	현 황
컴퓨터범죄 방지를 위한 법·제도	비밀침해, 컴퓨터사기, 정보의 위작·변작, 재물손괴, 업무방해, 불건전 정보 유통 등의 컴퓨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별 관련 법률등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개인 행정정보의 보호,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 등의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의 정보보호관련 법·제도	전자상거래 등 정보기술의 활성화에 따른 정보서비스 차원에서의 보호를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화물유통촉진법, 무역업무 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보호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보보호 원천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거래 기본법, 대외무역법 등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III. 정보보호관련 법·제도

1. 법·제도 현황

국내의 정보보호관련 법·제도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정보보호의 기본 지침을 두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보호 활성화 지침 등을 두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컴퓨터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형법에 컴퓨터범죄에 관련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국내의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은 표1과 같다.

2. 법률 제·개정 현황

정보보호는 법·제도, 산업, 기술, 국민인식 등 여러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정보를 정확한 용도로 사용·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정보보호산업의 활성화와 최근에 이슈로 부각되는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제정·개정의 필요성과 컴퓨터의 보급확대와 정보통신망의 이용 확대에 따라 컴퓨터범죄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범죄의 유형을 분류할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컴퓨터범죄를 단호하게 처벌하고자 총체적·부분적으로 법률의 제정·개정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으로 체계적인 정보산업육성정책을 위한 정보보호에 관련한 표준, 기준, 평가제도를 정부기관 주도 하에 준비하고 있고, 컴퓨터범죄에 대응하는 침해사고 전담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가고 있으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정보의 적절한 보호조치와 국가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정보의 재산성과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등 법·제도화 정책이 수립, 검토, 추진되고 있다.

국내의 정보보호관련 법률의 제·개정 현황은 표2와 같다.

IV. 정보보호관련 법규별 분석

1. 법률적 용어의 정의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헌법 : 국민의 기본법과 국가의 통치질서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며 최고법임
- 법규 :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 규범임
- 법률 :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되는 국법형식의 하나임
(법체계상 헌법에 다음가는 효력을 지님)
- 법령 : 일반적으로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등을 총칭함
- 명령 :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가의 법령으로 크게 위임명령, 집행명령이 있으며 형태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등이 있음(법 체계상 법률보다 하위법규임)
- 고시 :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국민 일반에

표 2. 정보보호관련 법률 제·개정 현황

법률구분	제정일	최근개정일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5장25조 부칙)	1994. 1. 7. (법률 제 4734호)	1999. 1. 29. (법률 제 5715호)
대외무역법 (8장10절60조 부칙)	1986. 12. 31. (법률 제 3895호)	1999. 2. 8. (법률 제 5825호)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7장29조 부칙)	1991. 12. 31. (법률 제 4479호)	1999. 2. 5. (법률 제 5769호)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22조 부칙)	1994. 12. 22. (법률 제 4824호)	1999. 2. 8. (법률 제 583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6장35조 부칙)	1995. 1. 5. (법률 제 4886호)	2000.1.21. (법률 제 6172호)
전기통신기본법 (7장4절53조 부칙)	1983. 12. 30. (법률 제 3685호)	2000.1.28. (법률 제 6231호)
전기통신사업법 (7장4절78조 부칙)	1983. 12. 30. (법률 제 3686호)	2000.1.28. (법률 제 6230호)
전자거래기본법 (6장34조 부칙)	1999. 2. 8. (법률 제 5834호)	-
전자서명법 (6장34조 부칙)	1999. 2. 5. (법률 제 5792호)	-
전파법 (9장3절93조 부칙)	1961. 12. 30. (법률 제 924호)	2000.1.21. (법률 제 6197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 (7장32조 부칙)	1986. 5. 12. (법률 제 3848호)	1999. 5. 24. (법률 제 5986호)
정보화촉진기본법 (6장37조 부칙)	1995. 8. 4. (법률 제 4969호)	2000.1.21. (법률 제 6197호)
통신비밀보호법 (18조 부칙)	1993. 12. 27. (법률 제 4650호)	2000.1.12. (법률 제 6146호)
형법 (2편42장13절372조 부칙)	1953. 9. 18. (법률 제 293호)	1997. 12. 13. (법률 제 5454호)
화물유통촉진법 (10장58조 부칙)	1991. 12. 14. (법률 제 4433호)	2000. 1. 28. (법률 제 6239호)

- 게 알리는 공고형식을 의미함
 · 공시 :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나 권리능력, 행위능력 등에 관하여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공시형식을 의미함

2. 법규의 법주적 분석

2.1.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제도

국내 정보보호관련 법률에서의 정보의 공개는 특정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비공개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국가·기업의 정보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정보의 불법 침해를 방지하는데 있다. 즉, 정보의 고유기능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망에서 전송되는 정보나 전자매체에 저장된 정보의 공개는 이해 당사자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범죄수사나 국가보안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관련 법집행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정보보호관련 법률에서의 정보 공개규정은 전자문서(EDI)에 관련하여 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 8(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산업기술기반에 관한 법률 제8조(산업정보의 안전관리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전자문서 등의 공개제한)에서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군사기밀보호법 제7조(군사기밀의 공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2.2.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호조치에 관한 법·제도

정보는 적절한 수준의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유지해야 만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은 물리적·논리적 헛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PC통신의 일반화로 보안조치의 헛점을 이용한 정보의 악용·오용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세계각국은 자국의 유용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을 투자하여 정보보호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여러기관에서 정보보안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정보보호관련 법률에서도 정보시스템과 정보의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현행 정보보호관련 법률에서의 보호조치 규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 7(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산업정보의 안전관리 등),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 동법 시행령 제4조(전산실 등의 관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동법 시행령 제12조(전담사업자의 업무 등), 동법 시행령 제18조(산업정보전산망의 안전관리)등에서 정보보호조치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2.3 컴퓨터 범죄와 처벌에 관한 법·제도

2.3.1. 컴퓨터 범죄

컴퓨터 범죄를 OECD에서는 데이터의 자동처리와 전송을 수반하는 불법적·비윤리적, 권한없는 행위로 한 컴퓨터 자료에 대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규정했다. James A. Sweizer는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컴퓨터, 단말기, 통신망 등 컴퓨터의 구성요소에 대한 접근을 요소로 하는 범죄로 정의했다. 그리고 Steven L. Mandel은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같은 조건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큰 위험을 일으킬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규정했고, Donn Parker는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행해진 화이트칼라의 범죄이고, 상업 범죄의 도구로써 컴퓨터를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따라서 컴퓨터 범죄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에 의해 제어된 자원이나 컴퓨터 사용이 포함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사기와 오용이라 할 수 있다.

2.3.2. 데이터의 부정조작·변작 범죄

데이터의 부정조작·변작범죄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8조(산업정보의 안전관리 등)의 제4항, 제5항, 제6항, 제22조(별칙) 제1항,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18조(전자문서 및 무

역정보에 관한보안)의 제1항, 제25조(벌칙), 화물유통촉진법의 제48조의7(전자문서 및 물류정보 보안)의 제1항, 제54조의 2(벌칙),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22조(비밀 등의 보호), 제28조(벌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32조(벌칙) 제11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제23조(벌칙) 제1항, 형법에서는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 위작·변작),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제229조(위조등공문서의행사), 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제234조(위조사문서 등의 행사)등에 규정을 두고 있다.

2.3.3. 비밀 침해에 관한 범죄

비밀침해에 관한 범죄에 관련한 법률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8조(산업정보의 안전관리 등)제3항, 제22조(벌칙)제2항 제2호, 무역업무자동화추진에 관한 법률의 제18조(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제2항, 제3항, 제26조(벌칙) 제3항, 제4항, 화물유통촉진법의 제48조의7(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제2항, 제5항, 제54조의3(벌칙)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22조(비밀 등의 보호), 제28조(벌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27조(업무목적 외 누설금지 등) 제1항, 제2항, 제32조(벌칙) 제9항, 형법의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제316조(비밀 침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제23조(벌칙)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의 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제1항, 제70조 제4항(벌칙), 전파법의 제30조(통신보안의 준수)제1항, 통신비밀보호법의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등이 있다.

2.3.4. 업무방해에 관한 범죄

업무방해에 관한 범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손상을 주거나 유·무선 통신을 통해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장애를 유발하도록 하여 고유의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형법 제314조의 2 제2항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

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3.5. 재물손괴 · 은닉 등에 관한 범죄

재물손괴 · 은닉 등에 관한 범죄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기록(데이터)이나 저장장치(하드디스크, 테이프 등) 등에 있는 데이터를 손상하거나 은닉, 또는 본래의 정보가치를 해하는 경우와 타인의 정보를 손상 또는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로 형법 제141조 제1항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제141조의 1 제1항을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66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6. 컴퓨터사기에 관한 범죄

컴퓨터사기에 관한 범죄는 컴퓨터 보급확대와 그 기능이 커짐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타인의 허락없이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범죄로 형법 제 347조의2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4.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법 · 제도

정보화는 개인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주는 대신에 정보의 집중화로 인한 일부 기관이나 개인에 의해 손쉽게 정보를 남용·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 유형은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개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주는 경우, 악의를 가지고 정보를 조작·이용하는 경우, 불법적인 도청이나 감청에 의하여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은 정보화와 병행하여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한 사생활의 보호 및 자유에 관한 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하며,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별도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은 정의, 비공개의 원칙, 정보주체의 동의, 권리, 정보수집 책임자와 책임 등을 규정해야 하는 등의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한다. 국내 법률 중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등으로 기본 권리규정을 두고 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규정 및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 제6조(사전통보), 제7조(개인정보화일의 공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 제1항(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강구 규정), 제2항(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확보규정), 제3항(위탁받은 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강구 규정), 제11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 개인정보 누설 및 제공 등의 금지 규정), 제23조(벌칙) 제1항(변경 및 말소 : 10년 이하의 징역), 제2항(누설 및 권한없이 처리·제공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제공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동법 시행령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 제1항, 제2항,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전산설 등의 관리) 제1항,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의 제3조(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검열, 감청, 공개, 녹음, 청취 금지), 제4조(불법으로 취득한 내용, 불법감청에 의한 기록은 재판증거 등으로 사용하지 못함), 제16조(벌칙)의 제1호(불법검열·감청·녹음·청취, 취득한 정보공개·누설 : 7년 이하의 징역), 제2호(취득한 통신비밀 정보를 범죄수사 또는 예방 등의 사용 외에 공개하거나 누설 시 : 7년 이하의 징역),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15조(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수집 및 조사금지), 제24조 제1항 제1호(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의 제한의 예외), 제25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22조(비밀 등의 보호) 등이 있다.

3. 법규의 개별적 분석

3.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4호로 제정되었고, 1999년 1월 29일 법률 제5715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동법은 제2조에서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은 제정 목적 자체가 공공기관의 정보수집에 의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고에서의 정보보호 특히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문제의 핵심적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총5장 25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모든 공공기관들에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 신상정보의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개인정보를 누설 유출하는 경우, 부당하게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고객명단을 자사광고홍보 이외에 다른 용도로 유출하는 경우 등에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고 하여 동법이 공공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있어 일반법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공공기관이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공공기관 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두어(제22조) 공공기관 외의 개인 또는 단체도 공공기관의 예에 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제2장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함에 있어 보유

범죄, 사전통보사항,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개인정보화일대장 작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9조는 '공공기관의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제3장은 처리된 정보의 열람·정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열람 및 열람제한, 정정청구, 불복 청구, 대리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은 보 칙규정으로서 수수료, 자료제출요구, 의견제시 및 권고,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정부투자기관 등의 지도·감독,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 정보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벌칙규정으로 각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 개인정보취급자로 개인정보 누설 혹은 부당이용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법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으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3.2. 대외무역법

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6년 12월13일 법률 제3895호로 제정되었고, 1999년 2월8일 법률 제5825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8장 10절6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을 두고 있다. 정보보호관련 법률 조항은 제21조에서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등에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전략물자수입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54조의2에서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자나 수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수출한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21조에서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하 "전략

물자"라 한다)등에 대한 수출입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2에서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에서 전략물자수입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3.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무역업무의 자동화를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고, 1999년 2월5일 법률 제5769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 7장 29조 부칙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두고 있다. 정보보호 관련 조항은 제1장 총 칙에서 전자문서와 관련된 용어 정의, 적용범위 등을, 제 4장에서는 전자문서의 표준화 및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 5장에서는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 7장에서는 무역자동화망에서 이용되는 전자문서나 컴퓨터 파일의 훼손·누설·위조·변조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3.4.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업·광업 및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기반을 조성하고 공업·광업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4호로 제정되어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34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22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정보보호 관련 조항은 제2조에서 전자문서, 전자서명에 대해 정의를 하였고, 제8조에서는 산업정보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22조에서는 산업정보망의 침해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3.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신용정보망을 구축하고 정보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측면과 함께 정보사회

에서의 사생활 비밀 정보로서 보다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할 신용정보에 대한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866호로 제정되었고, 2000년 1월 21일 법률 제6172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 6장 35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보호관련 조항은 제19조에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에 관한 규정, 제27조에서 업무목적 외 누설금지 등에 관한 규정, 동법 제28조에서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 처벌에 관한 규정은 제32조 제2항 제9호, 제11호와 제 35조 제1항 제3호에서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다.

3.6. 전기통신기본법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3년 12월 30일 법률 제3685호로 제정되었고,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1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 7장 4절 5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이 법은 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은 아니며 다만 통신의 관리 차원에서 제22조에 비상시의 통신확보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동법의 하위법규이라 할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안전성 및 신뢰성기준을 두고 있다.

정보보호의 표준화를 위해 동법 제30조에서 전기통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및 전기통신 역무이용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통신사업자간 분쟁의 재정을 하기 위하여 통신위원회를, 정보통신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각각 정보통신부에 두도록 규정(동법 제37조, 제44조의2)하고 있다.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 전기통신설비는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정보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1994년 제정된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안전성 및 신뢰성기준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동 기준 제4조에서 이용자의 식별 또

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통신시스템을 취급하는 정보통신설비에는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차원에서 부당한 이용자의 접근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을 자료별로 사용자에 대한 접속 가능영역 및 취급범위 등을 제한하는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여 역시 통신설비의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3.7. 전기통신사업법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전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3년 12월 30일 법률 제3868호로 제정되었고,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 6230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법은 총 7장 4절 78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동법 역시 정보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것은 아니나 본문 중에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 53조의2에서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통신비밀의 보호 규정을 따로 두어 누구든지 전기통신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54조, 제70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비밀의 침해 또는 누설을 방지하는 규정을 통해 전기통신역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재직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3.8. 전자거래기본법

이 법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여 그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 및 거래의 풍정을 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전자거래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34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총6장 3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이 있다. 정보보호관련 조항은 제1장 총칙에서 전자문서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제2장에서는 전자문서의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전자거래의 안전에 관한 개인 정보 보호, 컴퓨터안전성, 암호제품 사용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장 전자거래의 촉진에 있어서 전담 기구의 설치, 전자거래의 표준화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자거래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두도록 규정(동법 제21조, 제22조)하고 있다.

3.9. 전자서명법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1999년 2월5일 법률 제5792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총6장 3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정보보호관련 법률조항은 제2조에서 개인정보와 비대칭암호화 방식에 대한 정의, 제3조에 전자서명의 효력과 제6조에 인증업무준칙 등 안전과 신뢰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4조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6장에서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전자서명키의 유출, 도용, 누설, 타인명의의 인증서 발급, 수집된 개인정보의 타 목적이용, 유출, 누설, 타인에게 제공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3.10. 전파법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의 진흥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 924호로 제정되었고, 2000년 1월21일 법률 제6197호로 최근 전문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9장3절93조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동법 제30조 제1항에서 시설자,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무선통신관계자에 의한 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동법 제91조제3호에서는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동법에서 정했던 통신보안준수사항의 상세내용 및 통신보안 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상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통신보안용 약호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무선통신망에서 사용하는 통신보안용 약호자재의 사용승인,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통신보안용 약호자재관리 세칙이 따로 제정되어 있다.

3.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6년 5월12일 법률 제3848호로 제정되었고, 1999년 5월 24일 법률 제5986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7장32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동법 제24조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16조~제18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에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 고시하여 2000년6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제19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지침을 제정 고시하여 2000년 9월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누구든지 불법 또는 보당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침해 또는 해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29조)고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인 정보보호를 꾀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해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22조, 제28조)고 규정하여 정보통신망과 관련하여 정보의 침해 및 누설이 되는 경우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제23조 및 제32조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사건에 대한조사와 과태료 부과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2000년6월5일에 제정, 정보통신부 훈령으로 공포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제21조에서 중요정보의 국외유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개인의 산업·경제·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3.12. 정보화촉진기본법

이 법은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년 8월 4일 법률 제4969호로 제정되었고, 2000년 1월21일 법률 제6197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6장 37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있다. 정보보호관련 법률 조항은 제2조에서 정보보호의 용어를 정의하고, 제10조에서 한국전산원의 설립을 규정하고, 제14조에서 정부의 정보보호를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와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하는 조치 강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4조의2에서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조에서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고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13. 통신비밀보호법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50호로 제정되었고,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46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18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결국 이 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핵심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겠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듯이 이 법 역시 우편물, 전기통신의

비밀보호문제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겠다. 과거에는 우편물의 검열과 관련하여 우편법(환부우편물 등의 처리와 관련),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행형법·군행형법(구속·복역중인 자 관련), 파산법(파산자 관련) 또는 관세법(수출입물 관련)등에 산재되어 규정하고 있던 것을 통신비밀 침해에 관한 일반법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금지하고(동법 제3조), 이를 위반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제16조)하여 통신비밀을 직접적으로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동법은 이 외에도 불법침역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도청에의 전기통신 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및 허가 절차,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진급처분,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통신제한조치에 의해 취득한 내용의 공개금지 및 사용제한, 전화협박 등의 방지를 위한 제한, 타인의 대화비밀침해금지 및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의 벌칙규정을 통해 실질적인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한 각종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은 하위법규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두어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법 시행령에서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및 비밀유지에 관한 규칙을 두어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 및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의 허가에 관련된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허가과정·허가여부·허가내용등에 대한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3.14. 형법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효과로서 어떠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범으로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었고, 1997년 12월13일 법률 제5454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2편 42장13절 372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정보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형법은 그 침해행위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

성요건에 해당하였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정보의 침해도 반드시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이어야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인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에 있어 형법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형법이 개정되었다.

● 업무방해죄 (제314조 제2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물 등 특수 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제347조의 2)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물손괴죄 (제366조)

타인의 재물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제227조의2)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위조 등 공문서행사 (제229조)

제 225조 내지 제 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비밀침해죄 (제316조,제2항)

봉함 기타 비밀장치 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제312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

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제234조)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제140조 제2항)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용서류등의 무효화죄 (제381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규정들이 정보를 침해하는 각종의 행위를 규제·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형법은 정보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법이라 볼 수 있다.

3.15. 화물유통촉진법

이 법은 물류의 표준화, 정보화와 복합운송주선업,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류체계를 합리화하고 화물의 유통과 관련된 사업의 전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화물유통의 촉진과 물류비의 절감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 12월14일 법률 제4433호로 제정되었고, 2000년 1월28일 법률 제6239호로 최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 10장 58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보호 관련 조항은 제2조에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6장에서 물류정보화에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10장에서 물류전산망과 전자문서의 위작, 침해, 훼손, 도용, 누설 등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3.16. 기타

이상에서 살펴본 것 외에도 정보보호와 관계된 여러 개별법들이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보호), 저작권법(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편집저

작물의 보호)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프로그램의 보호), 특허법(컴퓨터 관련 발명의 보호) 등도 개별 조항의 차원에서 정보보호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IV. 결론

• 개별법에서의 정보보호 문제점

개별법으로 정보보호의 문제를 규정하거나 타법에서 정보보호의 문제를 개별조항으로 독립하여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8~9년 전부터이다. 앞서 많은 개별법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롭게 제정 혹은 개정하고 있으나 아직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첫째,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요성과 정보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정보침해자에 대한 처벌 정도가 너무 약하다는 점이다. 좋은 예로 은행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의 업무는 하나의 커다란 정보통신망을 구성하고 있어 정부는 물론 많은

업체와 국민의 사회·경제적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그 침해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 손실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통신망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또는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를 주어 업무처리에 방해를 한자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업무방해죄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되어 그 중요성에 비해 형량이나 벌금이 미약한 편이다. 반드시 형량이 많고 벌금이 높아야 좋은 법이라 할 수는 없으나, 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볼 때 형법의 업무방해죄는 그 처벌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보침해자 처벌규정의 형평성 문제이다.

〈표3〉을 보면 정보침해에 대응하는 관련 법규의 형량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업무관련의 직무관련 비밀누설에 의한 비밀침해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의 5년 이하의

표 3. 정보침해에 대한 형량의 비교

범죄종류	관련법규	구성요건	처벌내용
정보내용의 위·변조에 의한 정보침해	형법(제314조의 제2항)	정보내용의 위·변조 등을 통한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제347조의2)	정보내용의 위·변조 등을 통한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1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변경·밀소한자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인의 비밀누설 등에 의한 정보침해	전기통신사업법(제70조)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인 통신비밀을 침해·누설한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제28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도용, 또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비밀보호법(제16조)	우편물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등의 통신비밀을 침해한자	7년 이하의 징역
	형법(제316조 제2항)	봉함 기타 비밀장치 한 편지·문서·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 제3항)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제공받는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제140조 제2항)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비밀로 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도서·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관계자의 직무관련비밀누설에 의한 비밀 침해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 제3항)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하였던 자가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별법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있음은 인정하지만 표에서 보여지는 몇몇의 경우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법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서로 다른 법에서 같은 범죄의 형량이 지나치게 다를 경우 법률가들이 아무리 법 적용을 잘 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 하더라고 사회의 법적 안정성에서 커다란 헛점이 생기게 된다. 이는 개별법의 입법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도 있으나 향후 개정시에는 내용상의 상호 보완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이 때의 양형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 정보침해에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여러 개별법에서의 정보보호 관련 조항에는 권한없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사용하는데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권한없는 자가 컴퓨터를 사용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한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컴퓨터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여 본래의 소유자(업무 담당자 등)가 자신의 정보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되고 정보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용절도는 처벌근거가 미약하다. 그런데 형법 제331조의2에서는 자동차등의 불법사용죄라 하여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일시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하여 자동차 등의 사용절도를 인정하고 있다. 정보화시대에서 자동차 등의 사용 못지 않게 정보기기 사용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이를 처벌할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개선방향

문제점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정보보호 관련조항은 각 관련법위 안에서의 대응에만 치우친 나머지 전체적 법제의 통일이나 균형문제 등은 아직 피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 좋은 예가 이미 살펴본 정보 침해자 처벌규정에서의 형평성 문제이다. 개별법 규에 따라서 동일한 사항이 다르게 취급된다면 이는 실질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보침해유형의 대응문제와 동시에 정보보호 관련법규의 조정문제가 요청된다 하겠다.

이 때 관련법규의 단순한 통폐합이라는 차원의 조

정이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정보보호라는 전체적 시각에서 정보보호법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보호법규 역시 독립된 것은 아니며 정보관련 입법이나 전체 법률속의 한 분야이므로 관계법과 연계하여 법규의 충돌이나 형평성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보보호법규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선진국의 정보관련 법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정보자유법과 정보공개법의 충돌문제가 정보관리권의 한계문제로서 조정된바 있으며 그 밖의 선진국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제·비밀준수관계법제, 컴퓨터범죄방지법제·정보화사회 촉진법제 등의 문제가 조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역시 과거 개별법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계속적으로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기술 및 연관기술의 이론적·실용적 기법의 연구를 강화하여 야기될 수 있는 역기능의 방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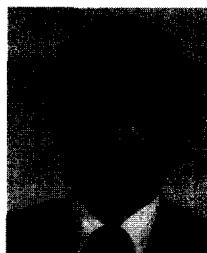
향후 정보보호를 위해서 정보 프라이버시의 개념, 신용정보의 개념,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의 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단일법제의 가능성 연구는 정보의 무권한적 침해에 대한 단일 보호법제의 가능성, 대중적인 PC보급과 인터넷사업자의 보편화에 따른 크래킹(cracking) 등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확보 대책, 사이버 테러에 대한 방지 및 대응 대책, 소위 해킹 관련 기술의 공공연한 전파에 대한 규제법제 연구도 포함하여 총체적인 “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1] 강경근,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공개 문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12.
- [2] 이선희, 박기식, 이대기, “국내 정보통신관련 법규 분석”, 한국통신학회지, 1993. 6.
- [3] 최영호, “컴퓨터 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지, 1994. 6.
- [4] 신각철, “국가기밀과 정보의 처리, 전송 등 유통문제”, 월간 정보화사회, 1994. 12
- [5] 이선희, 박기식, “국내 정보보호관련 법규의 분석 및 고찰”, 전자통신동향분석, 1995. 7.
- [6] 남길현, “전산망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서비스”, 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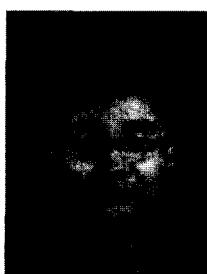
- 정보화사회, 1996. 5.
- [7] 김국범,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역기능과 대책”, 한국행정연구, 1996. 9.
- [8] 한국전산원, “전자거래 및 EDI 관련 법제도 정비방향연구”, 1996. 12.
- [9] 한국정보보호센터, “국내외 정보보호관련 법제도 현황”, 1996. 12.
- [10] 이사범, “인터넷 정보보호 대책에 관한 연구”, 월간 정보화사회, 1997. 4.
- [11] 신상각 편저, “정보통신관계 법령집”, 진한도서, 1997. 6.
- [12] 임신영, 송유진, 함호상, “OECD 암호정책을 수용한 CALS/EC 보안기술체계”, 한국CALS/EC학회지, 1997. 11.
- [13] 송실대 법학연구소, “정보보호관련 법령개선방안 연구”, 1997. 11.
- [14] 신일순, 박민성, 류인모, “정보보안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7. 12.
- [15] 오병철, “전자거래기본법”, 법원사, 1999. 1.
- [16] 김춘아,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의 영향 및 의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5.
- [17] 조상원 편저, “대한민국 법전”, 현암사, 2000. 1.
- [18] 조현숙, “정보보호 기술개발 전략”, 한국통신학회지, 2000. 3.
- [19] 주덕규, 박광진, “정보통신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현황과 발전과제”, 한국통신학회지, 2000. 3.
- [20] 배대현, “전자서명, 인터넷법”, 세창출판사, 2000. 3.
- [21]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2000. 5. 1.
- [22]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2000. 6.
- [23] 행정자치부, “대한민국 관보”, 1998. 11. ~ 2000. 8.
- [24] 정보통신부, “개인정보침해사건 조사와 과태료부과 업무 등 처리규정”, 훈령 제230호, 2000. 6. 5.
- [25]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지침”, 2000. 8. 31.
- [26] <http://www.moleg.go.kr/docs/glawdoc/law-a.html>
- [27] <http://www.mic.go.kr>
- [28] <http://www.mocie.go.kr>

(著者紹介)



이 대 기 (Dai-ki Lee)

1966. 2 :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
 1987. 2 :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석사
 1966. 2 ~ 1980. 3 : 정보통신부 통신사무관
 1980. 4 ~ 1998. 7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부호기술연구부장
 1998. 8 ~ 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기술연구본부 초빙연구원
 프로트정보통신(주) 이사,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 감사
 주관심분야 : 정보보호/전자거래법·제도·정책, 네트워크보안, 정보시스템감리



조 영 섭 (Yeong-sub Cho)

1993. 2 : 인하대학교 전자계산공학과 학사
 1995. 2 : 인하대학교 전자계산공학과 석사
 1999. 2 : 인하대학교 전자계산공학과 박사
 1998. 12~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기술연구본부 인증기반연구팀 선임연구원
 주관심분야: 컴퓨터/네트워크보안, DBMS, 정보보호(PKI)



윤 이 중 (E-joong Yoon)

1988. 2 : 인하대학교 전산과 학사
 1990. 2 : 인하대학교 전산과 석사
 1997. 2 ~ 현재 : 충남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박사과정
 1990. 2 ~ 1999. 1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호기술연구부
 1999. 1 ~ 2000. 3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기술연구본부 인증기반연구팀장
 2000. 3 ~ 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기술연구본부 정보보호시스템연구부장
 주관심분야 : 컴퓨터/네트워크보안, DBMS, 정보보호(PKI)



조 현숙 (Hyun-sook Cho)

1979 : 전남대학교 수학과 이학사
 1991 : 충북대학교 대학원 전자계산학과 이학석사
 1999 : 충북대학교 대학원 전자계산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2 : 충북대학교 전산학과 시간강사
 1982 ~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보보호기술연구본부장
 주관심분야 : Network Security, Conditional Access